

##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 (판매기업용 - 상환청구권 있음)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수 입  
인 지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담당	책임자	관리자	부점장

### 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본인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의 포괄한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 1 조 거래조건

① 본인과 은행은 포괄여신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다만, 본인의 여신신청은 각 여신과목별 한도내의 취급잔액의 합계액이 해당 여신종별한도(포괄한도 \_\_\_\_\_) 및 총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만, 외화여신과 원화여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화여신의 원화 환산율은 매 직전 은행영업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총 한도		금 원( )		
여신종별한도 (포괄한도 )		금 원( )		
여신 과목 별 한도	여신과목	금액	거래구분	이자율
		금 원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구매기업 기준으로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지연배상금률		지연배상금률은 제 1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 )%를 더하여 결정하며, 최고 연( )%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구매기업 기준으로 산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input type="checkbox"/>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

- ② 귀행이 승인하는 때에는 총한도 범위 내에서 여신종별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③ 이 약정에서 정한 이자,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을 계산할 때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상관습에 따릅니다.  
④ 분할취급 대출은 건별로 각각 매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⑤ 본 포괄한도 금액 내에서 은행이 허용하는 개별여신과목 신규 및 한도간 전용은 추가약정서 제출 등 별도의 의사확인 없이 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⑥ 포괄한도 금액 내에서 개별 여신 신청시에는 여신신청서(포괄한도 범위내 신청용)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⑦ 여신실행방법, 상환방법, 이자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여신 실행 방법	<input type="checkbox"/>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 방법	<input type="checkbox"/> 대출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 유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 및 이자지급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미래채권담보대출은 건별 대출취급 다음달부터 해당일에 매월 지급하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은 대출 취급시 담보로 제공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일까지 지급합니다.

## 제 2 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 )와 체결한 업무협약서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 제 3 조 지역배상금

-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역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유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7 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유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9 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역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지역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4 조 감액·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다음 각호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유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아야 합니다.

###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의 구체적인 사유

- 가. 국가 또는 유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유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유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 조절대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 라. 기타 위의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의 구체적인 사유

-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 마.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 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바. 유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 제 5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유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유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유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제 6 조 상환자격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20 .	20 .	20 .	20 .
-----	------	------	------	------

5-06-0600(2/11) (2021.07 개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약관-457호(2021.07.09)

(보존년한: 원제일로부터 5년)

부 채 비 율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비율	%	%	%	%	%	%
( ) 비율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 7 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 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 제 8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	---

## 추가약정서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본인은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포괄한도거래약정서(이하 "원 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 제 1 조 (용어의 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기업”이라 함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협력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매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협력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은행과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이하 “미래대출”이라 합니다)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를 말합니다.
- “발주서”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등의 품목, 발주금액, 납품기한, 발주서만기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은행에게 전송하는 구매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구입주문서, 구매승인서 등을 말합니다.
- “대금지급확약비율”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전송하는 발주서에 의해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미래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협력기업의 납품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기업이 반드시 결제하여야 하는 당연변제의무비율을 말합니다.
- “채권확정”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의 납품으로 발생하는 물품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 구매자료를 은행에 전송하여 외상매출채권 및 대금지급일을 확정(이하 “확정채권”이라 합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품기한”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해야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 “발주서만기일”이라 함은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예정일을 말하며, 미래대출 취급시 대출만기일로 지정되나 채권확정 시 지정되는 대금지급일로 대출만기일이 변경됩니다.
- “대금지급일”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협력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결제계좌에 구매대금을 입금하여야 하는 일자로서, 매출채권의 만기일을 말합니다.
- “매출채권”이라 함은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등을 납품함으로써 취득하는 외상매출채권과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취득하는 발주서 등 미래채권을 말합니다.
- “기업인터넷뱅킹”이라 함은 기업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 “전자적인 방식”이라 함은 발주서 전송, 채권확정, 외상매출채권 발행, 지급승인명세 전송 등 미래대출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기업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

### 제 2 조 (입금계좌의 지정)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개별대출금의 입금 또는 발주서상의 대금지급일 도래시의 결제대금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제 3 조 (발주서의 전송, 취소 및 변경)

- 구매기업이 은행에게 발주서를 통보한 경우, 대금지급일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본인과의 납품계약의 하자, 전산조작오류, 기타 사유를 이유로 은행에게 발주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 구매기업이 통보한 발주서에 대하여 본인이 미래대출을 실행하거나,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경우 구매기업은 발주서를 취소할 수 없기로 합니다.
- 구매기업이 발주서를 취소하는 경우에 은행은 취소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합니다.
- 어워매출, 연금용통성거래 등과 같이 상거래와 무관한 발주서 전송시, 은행은 강제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구매기업의 채권확정 전에 한하여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일,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이 발주금액에 대하여 일부라도 미래대출을 실행한 경우에는 이미 취급한 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서만기일을 제외한 발주금액, 납품기한, 대금지급확약비율 등의 변경은 가능하기로 합니다.

### 제 4 조 (개별대출의 실행)

- 원 약정서 상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구매기업과 약정한 발주서 상의 대금지급확약비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지급확약금액”이라 합니다)의 80%범위 내에서 발주서별로 최대 5 회까지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대출의 실행은 발주서 상 납품기한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출실행시 발주서 상 발주서만기일로 임시 지정됩니다.

- ④ 은행 또는 인터넷 등 전산상의 사유로 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대출 신청하기로 합니다.

#### 제 5 조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①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또는 지급승인명세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채권확정을 할 경우, 은행은 본인과 별도 약정한 확정채권 여신약정(상생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생일반구매론 등)에 따른 대출이나 선입금(이하 “확정채권대출”이라 합니다)을 실행하여 개별대출금 만기일에 불구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② 구매기업이 납품기한까지 채권확정을 하지 않는 경우 발주서 조건에 따라 지급확약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고 발주서만기일을 대금지급일로 하여 매출채권이자동확정되며 개별대출금 만기일은 대금지급일로 확정됩니다.
- ③ 전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대금지급일에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④ 전항의 개별대출금을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액 변제 받지 못한 경우, 그 나머지 대출금은 본인이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전까지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합니다.
- ⑤ 구매기업에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 11 조의 2에서 정한 거래정지 사유 또는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제 1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소멸되고, 동 사유 발생 즉시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은 은행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⑥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채권확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해소한 후 채권확정하거나, 제 2 항부터 제 4 항에 따라 개별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확정채권대출의 한도부족이나 미약정 또는 약정기한 경과
  2. 채권확정금액이 상환하여야 할 개별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및 확정채권대출 이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기타 본인 및 구매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⑦ 개별대출금의 상환일에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원 약정서에서 정하는 지연배상금률 및 방법으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6 조 (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미래대출의 실행을 제한하기로 합니다.

1.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 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2.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은행의 내규 등에서 정한 여신의 비적격자인 경우
3. 본인 또는 구매기업이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4. 본인 또는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어워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된 경우
6. 원 약정서 제 4 조(감액, 정지)에 의하여 본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7. 은행의 전산장애, 인터넷상의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구매기업이 대금지급일에 은행에 대하여 변제를 지체한 경우
9.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본인의 채권자가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 제 7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본인의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고의 또는 전산조작오류 등 과실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은행에 전송한 경우, 은행이 이를 본인에 의한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로 믿고 이에 따라 본인에 대한 대출을 취급한 이상, 은행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물지 않기로 합니다. 단,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이 약정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8 조 (대출약정의 종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약정서에 따른 은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면제되고, 본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은행에 변제하기로 합니다.

1. 구매기업에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어워매출, 현금용통성거래 등 기업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납품 용도 외로 발주서가 등록되어 대출을 받은 경우

#### 제 9 조 (추가약정의 효력)

- ① 이 약정의 효력은 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정기한까지 유효합니다.
-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 내 전송된 발주서에 대하여 미래대출이 취급된 경우에는 상환될 때까지 이 약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원 약정서에서 정한 여신기간 만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원 약정서의 여신기한은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매기업과의 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 업무협약의 연장 기간에 따라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연장처리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별대출금이 여신기간 만료일 현재 연체중인 경우
  2. 본인에 대해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관련인정보,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 ④ 이 약정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그 다음으로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기업용)」,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순서로 합니다.

## 추가약정서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한 \_\_\_\_\_년 \_\_\_\_월 \_\_\_\_일자 포괄한도거래약정서(이하 "원약정서"라 한다)에 추가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 제 1 조 (서류의 제출)

본인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귀행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① 제출서류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청서(또는 현금입금 신청서)
  2. 본인 발행 세금계산서
  3. 기타 귀행이 요청하는 서류
- ② 본인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서류 전송 및 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 1 항의 서류를 귀행의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의 거래처(구매기업)가 전송하여 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담보 외상매출채권 명세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본인이 확인한 후 대출신청 또는 현금입금신청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제1항의 서류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제 2 조 (입금계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대금 및 외상매출채권 만기결제 대금의 입금을 위한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CMS 계좌 제외)중 다음의 계좌로 합니다.

예금주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비고
			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

#### 제 3 조 (개별대출의 실행)

- ① 운행이 원 약정서에 따라 본인에게 대출함으로써 본인이 부담하게 될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에 따라 본인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운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 ②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서면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은 운행이 본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 할 수 있기를 합니다.
- ③ 외상매출채권 별 대출가능금액은 채권금액에서 채권별로 이미 대출받은 금액 및 본인이 하위기업에게 발행한 상생벤더구매론 지급승인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합니다.
- ④ 대출가능기간은 외상매출채권별로 운행과 구매기업이 약정한 협력기업의 대출취급가능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직전 운행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⑤ 건별대출의 신청은 운행의 기업인터넷뱅킹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 4 조 (개별대출의 상환기일 및 상환방법)

- ① 원 약정서의 한도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개별대출금의 상환기일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만기일로 합니다.
- ② 제 1 항에 의한 개별대출금의 상환은 그 개별대출금에 대응하는 담보 매출채권의 만기일에 귀행이 동 채권의 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아 충당하고, 거래처가 만기일에 귀행에게 담보매출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③ 거래처(구매기업)에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 11 조의 2에서 정한 거래정지 사유 또는 운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행의 본인에 대한 대출의무는 소멸되고, 동 사유 발생 즉시 본인의 운행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은 운행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④ 거래처가 만기일에 입금(또는 결제)한 매출채권결제금액이 협력기업들(본인 포함)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대출 취급분, 미취급분의 순서로 회수하여 만기도록 순, 접수일자 순,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상환처리하기로 합니다.
- ⑤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출금 상환일 전일까지 원 약정서 제 1 조 제 1 항에서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 5 조 (대출의 제한)

- ① 본인이 신용정보관리규약 상의 신규여신금지 기업 또는 귀행의 내규에 의한 신규여신금지기업에 해당하거나 또는 전쟁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귀행은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② 인터넷 등 장애나 은행 전산상의 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귀행에 대출신청의 의사표시를 못하거나 기타 귀행 전산상의 장애로 귀행이 대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③ 기타 귀행이 채권양도통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제 3 자에 대한 귀행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못 할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는 본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④ 원 약정서 제 1 조의 여신한도금액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다른 협력기업의 대출잔액의 합계금액이 은행과 구매기업간에 체결한 “협력기업에 대한 총대출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6조 (관련법상 지연이자에 대한 유의사항)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지연이자 (할인료 또는 대출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구매기업이 「상생협력법」 상 납품대금을 물품 등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물품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 ② 구매기업이 「하도급법」 상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구매기업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까지의 대출이자

## 제 7 조 (정보제공의 동의)

이 약정의 원활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구매기업에게 본인에 관한 약정정보 및 사업자정보, 대출내역 등을 제공함에 동의하기로 합니다.

## 제 8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② 본 약정서의 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 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제 9 조 (상환 의무)

- ① 구매기업과 은행 간에 사전에 협의한 전산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명세 통보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기업인터넷뱅킹 또는 창구에서 대출 신청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정당한 외상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 차액은 본인이 즉시 갚기로 합니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 7 조 3 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본인이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허위·가공거래, 유통등에 의해 발행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취급된 경우
  2. 대출취급 시 작성오류, 허위, 위·변조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대출이 취급된 경우. 다만 작성오류인 경우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완 제출하면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10 조 (기한연장)

- ① 원 약정서의 여신기간 만료일은 은행 또는 본인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추가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구매기업의 신청에 의해 구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연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대출이 대출기일 현재 연체증인 경우
  2. 본인에 대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경우
  3.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발행받은 마지막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경우

## 제 11 조 (본 추가약정의 효력)

본 추가약정, 원 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본 추가약정이

가장 우선 적용되고, 다음으로 원 약정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 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기업용) (포괄계약)

(주)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_\_\_\_\_(이하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라 합니다)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_\_\_\_\_(이하 "구매기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등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제 1 조 (계약의 목적)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구매기업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게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양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 2 조 (양도할 대상채권 및 피담보채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아래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체결한 아래의 기본계약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일체의 채권(이하 "대상채권"이라 합니다) 전액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채무의 범위	은행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당사자 사이에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신거래약정"이라 합니다)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채무 기타 여신거래약정과 관련된 일체의 채무
기본계약	물품 또는 용역 등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_____년 _____월 _____일 체결한 _____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구매기업과 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

###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채권양도 등)

#### ① 확정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매출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경우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명세를 통보 받은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은행과 채권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구매기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를 합니다.
-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제 1 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대한 동의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교부·송부 받은 채권양도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득한 후 대출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 ② 장래채권 양도방식인 경우

- 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은행은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장래 발생할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장래채권 양도방식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 3 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외상매출채권은 이 계약에 의해 채권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에게 확정 외상매출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 1 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통지서(확정채권 양도통지용) 원본을 구매기업에게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이 채권양도계약과 관련하여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을 대리하여 구매기업 앞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대리권한을 은행에게 수여합니다.

### 제 4 조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진술 및 보증)

-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대상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고, 대상채권이 제 3 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구매기업으로부터 회수가능하고, 구매기업이 상계로 대항할 수 있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정을 보증합니다.
-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진술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은행의 요청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은 그 즉시 은행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 제 5 조 (변제충당 및 정산)

은행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대상채권을 구매기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우선적으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3 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은행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금원이 있으면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이 지정하는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협력기업(또는 판매기업)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

양도인은 공사의 부실·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제2조의 양도채권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곧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부족금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제 7 조 (특약사항)

--	--	--

(서명날인)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및 상생미래대 연계 상생외담대 통합약정서[포괄한도거래약정서 (기업용), 추가약정서(상생미래채권담보대출용), 추가약정서(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용, 상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포괄계약)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본인	(인)
--	----	-----

본인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과 관련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통합약정서 중요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상환청구권 및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설명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시 본인에게 대출금 상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함.	본인	(인)
--	----	-----

20 년 월 일

채권양수인 (은행)

본인(채무자겸 채권양도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 (인)  
주 소 : \_\_\_\_\_

\_\_\_\_\_ (인)  
주 소 : \_\_\_\_\_

#### 구매기업 (중심기업) 정보

업 체 코 드: \_\_\_\_\_  
중 심 기 업 명: \_\_\_\_\_  
중심기업사업자번호: \_\_\_\_\_

※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